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60호

도시관리계획(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[자연경관지구 중첩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“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(건폐율 및 높이) 기준 등” 결정 변경]

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“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(건폐율 및 높이) 기준 등” 결정 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서울특별시 장

1. 결정취지

- 서울특별시 「도시계획조례」 제34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을 반영하고자 자연경관지구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소에 대하여 건폐율 및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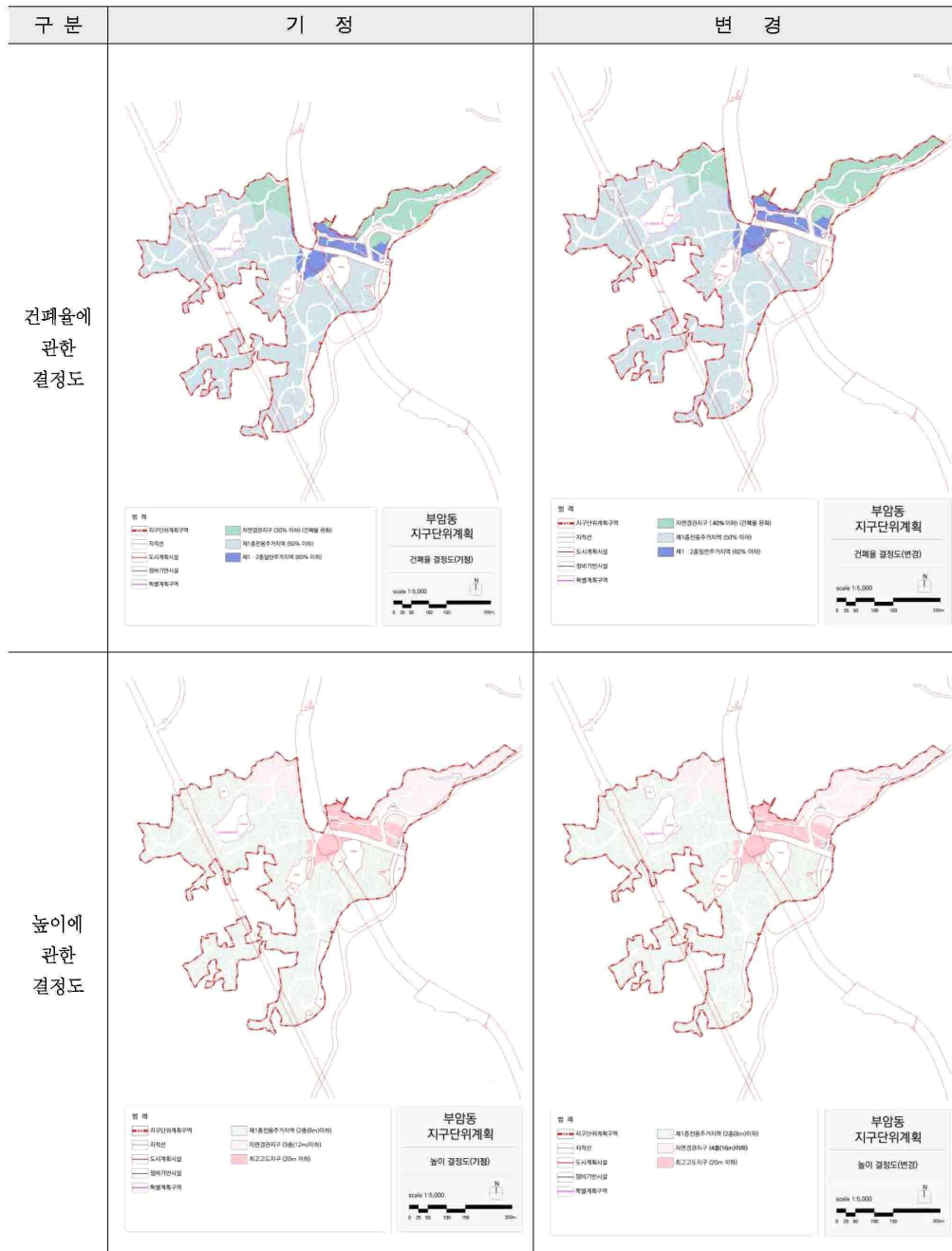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 구역

-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되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구역

자치구	지구단위계획구역명
종로	부암동, 혜화·명륜동
중구	필동 일대, 회현동 일대
성북	정릉3동 제1종
광진	광나루역, 화양1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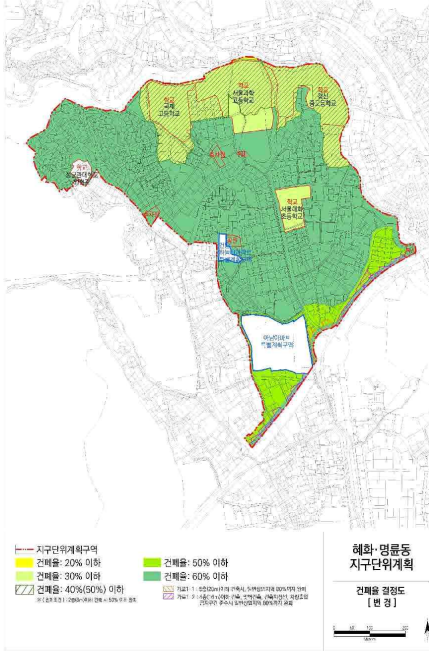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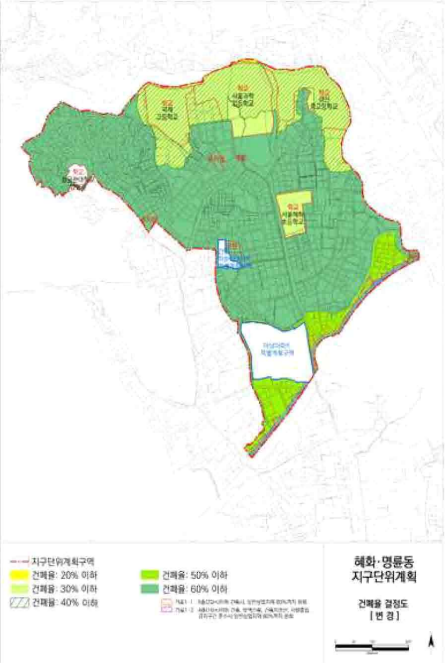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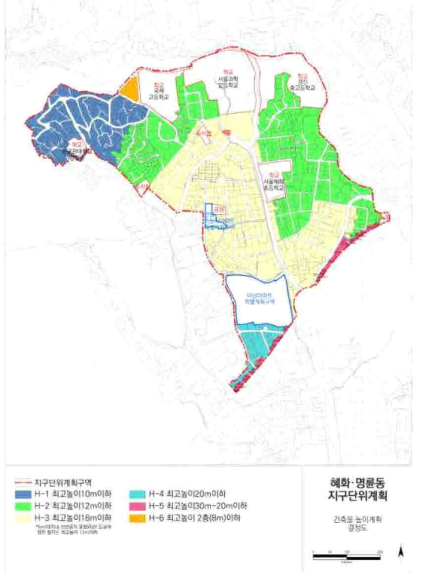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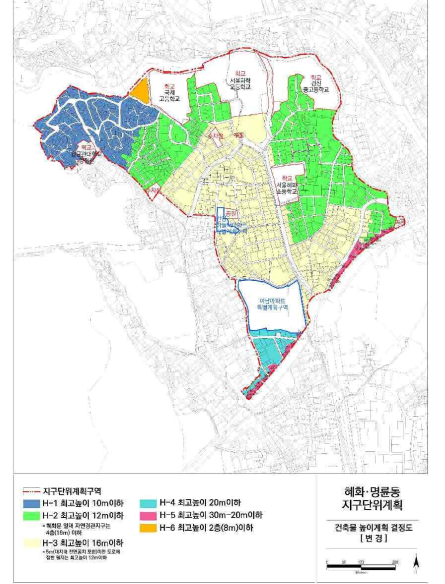
-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- 도시계획조례 제34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개정에 따른 ‘건폐율 및 높이 계획’
 - 건폐율 40%, 높이 4층, 16m 이하
3. 관계도면 : 변경없음(붙임 참조)
- 금회 변경된 사항에 한해 유효하며, 그 외 사항은 기정 내용을 따름.
4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(2133-8389) 및 자치구 지구단위계획(도시계획과 등) 관련부서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

○ 해화·명륜동 지구단위계획

획지 및
건축물
등에 관한
결정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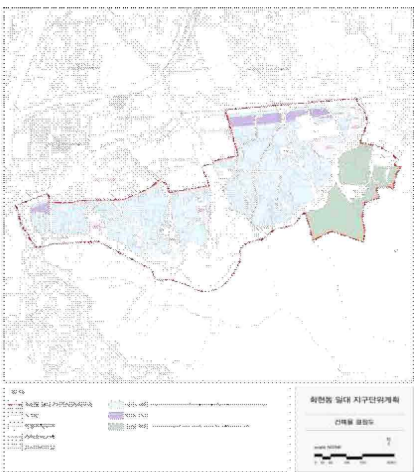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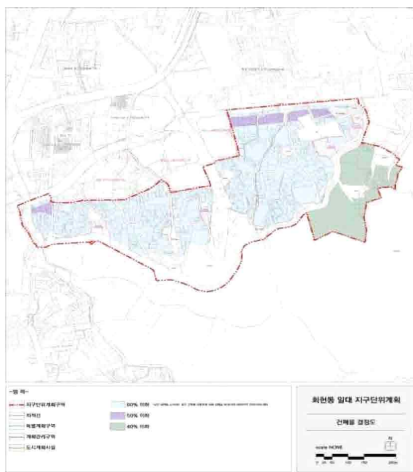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		
	■ 건폐율 결정(변경) 조서 <table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건폐율</th><th>건폐율 완화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—</td><td>자연경관 지구</td><td>30% 이하</td><td>40% 이하</td><td>높이계획과 연계하여 완화기준 충족 시 완화</td></tr>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건폐율 완화	비 고	—	자연경관 지구	30% 이하	40% 이하	높이계획과 연계하여 완화기준 충족 시 완화	■ 건폐율 및 높이 결정(변경)조서 ○ 자연경관지구 내 ‘건폐율 및 높이’ 기준 및 완화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름. ※ 현행 기준 조례(* 24.9.30. 개정)는 ‘건폐율 40% 이하, 높이 4층·16M 이하’ 임
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건폐율 완화	비 고								
—	자연경관 지구	30% 이하	40% 이하	높이계획과 연계하여 완화기준 충족 시 완화								
	■ 건폐율 완화 계획 결정(변경) 조서 <table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완화조건</th><th>계획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—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td>층수계획 연계</td><td>2층(8m)이하 건축 시 40%까지 완화</td><td>—</td></tr>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완화조건	계획내용	비고	—	자연경관지구	층수계획 연계	2층(8m)이하 건축 시 40%까지 완화	—	
도면 표시	적용구역	완화조건	계획내용	비고								
—	자연경관지구	층수계획 연계	2층(8m)이하 건축 시 40%까지 완화	—								
	■ 높이 계획 결정(변경) 조서 <table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높 이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—</td><td>H-2 해화1 해화2-1 명륜2-2 명륜3 가로3-2</td><td>최고높이 12m 이하</td><td>해화문 일대 자연경관지구 경사지붕 경사도 10:3~10:6 이내인 경우 1.5m이하까지 높이산정에서 제외.</td></tr></table> ※ 한옥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층 이하로 하며, 최고높이=h+0.65a(1층h=4, 2층h=7, a=건물폭)를 적용. ※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2조(높이산정 기준)를 따름.	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—	H-2 해화1 해화2-1 명륜2-2 명륜3 가로3-2	최고높이 12m 이하	해화문 일대 자연경관지구 경사지붕 경사도 10:3~10:6 이내인 경우 1.5m이하까지 높이산정에서 제외.			
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								
—	H-2 해화1 해화2-1 명륜2-2 명륜3 가로3-2	최고높이 12m 이하	해화문 일대 자연경관지구 경사지붕 경사도 10:3~10:6 이내인 경우 1.5m이하까지 높이산정에서 제외.									

구 분	기 정	변 경
건폐율에 관한 결정도	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: 20% 이하 건폐율: 30% 이하 건폐율: 40% 이하 해화·영문동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 [변경]	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: 20% 이하 건폐율: 30% 이하 건폐율: 40% 이하 해화·영문동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 [변경]
높이에 관한 결정도	 지구단위계획구역 H-1 최고높이 10m이하 H-2 최고높이 12m이하 H-3 최고높이 15m이하 H-4 최고높이 20m이하 해화·영문동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도 [변경]	 지구단위계획구역 H-1 최고높이 10m이하 H-2 최고높이 12m이하 H-3 최고높이 15m이하 H-4 최고높이 20m이하 해화·영문동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도 [변경]

○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	■ 건폐율 결정 조서 <table border="1"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건폐율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—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td>30% 이하</td><td></td></tr>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—	자연경관지구	30% 이하		■ 건폐율 및 높이 결정(변경)조서 ○ 자연경관지구 내 ‘건폐율 및 높이’ 기준 및 완화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름. ※ 현행 기준 조례(' 24.9.30. 개정)는 ‘건폐율 40% 이하, 높이 4층·16M 이하’ 임
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					
—	자연경관지구	30% 이하								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
건폐율에 관한 결정도	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■ 자연경관지구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m 초과 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m 초과 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5m 초과 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0m 초과 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5m 초과 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0m 초과 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5m 초과 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0m 초과 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5m 초과 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0m 초과 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5m 초과 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0m 초과 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5m 초과 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0m 초과 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5m 초과 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0m 초과 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5m 초과 1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0m 초과 1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5m 초과 1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0m 초과 1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5m 초과 1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0m 초과 1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5m 초과 1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0m 초과 1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5m 초과 1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0m 초과 1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5m 초과 1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0m 초과 1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5m 초과 1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0m 초과 1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5m 초과 1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0m 초과 1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5m 초과 1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0m 초과 1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5m 초과 1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0m 초과 1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5m 초과 2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0m 초과 2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5m 초과 2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0m 초과 2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5m 초과 2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0m 초과 2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5m 초과 2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0m 초과 2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5m 초과 2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40m 초과 2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45m 초과 2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50m 초과 2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55m 초과 2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60m 초과 2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65m 초과 2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70m 초과 2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75m 초과 2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80m 초과 2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85m 초과 2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90m 초과 2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95m 초과 3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00m 초과 3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05m 초과 3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10m 초과 3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15m 초과 3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20m 초과 3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25m 초과 3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30m 초과 3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35m 초과 3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40m 초과 3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45m 초과 3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50m 초과 3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55m 초과 3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60m 초과 3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65m 초과 3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70m 초과 3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75m 초과 3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80m 초과 3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85m 초과 3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90m 초과 3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395m 초과 4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00m 초과 4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05m 초과 4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10m 초과 4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15m 초과 4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20m 초과 4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25m 초과 4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30m 초과 4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35m 초과 4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40m 초과 4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45m 초과 4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50m 초과 4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55m 초과 4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60m 초과 4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65m 초과 4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70m 초과 4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75m 초과 4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80m 초과 4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85m 초과 4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90m 초과 4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495m 초과 5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00m 초과 5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05m 초과 5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10m 초과 5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15m 초과 5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20m 초과 5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25m 초과 5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30m 초과 5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35m 초과 5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40m 초과 5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45m 초과 5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50m 초과 5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55m 초과 5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60m 초과 5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65m 초과 5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70m 초과 5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75m 초과 5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80m 초과 5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85m 초과 5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90m 초과 5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595m 초과 6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00m 초과 6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05m 초과 6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10m 초과 6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15m 초과 6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20m 초과 6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25m 초과 6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30m 초과 6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35m 초과 6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40m 초과 6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45m 초과 6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50m 초과 6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55m 초과 6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60m 초과 6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65m 초과 6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70m 초과 6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75m 초과 6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80m 초과 6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85m 초과 6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90m 초과 6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695m 초과 7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00m 초과 7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05m 초과 7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10m 초과 7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15m 초과 7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20m 초과 7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25m 초과 7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30m 초과 7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35m 초과 7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40m 초과 7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45m 초과 7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50m 초과 7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55m 초과 7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60m 초과 7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65m 초과 7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70m 초과 7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75m 초과 7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80m 초과 7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85m 초과 7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90m 초과 7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795m 초과 8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00m 초과 8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05m 초과 8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10m 초과 8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15m 초과 8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20m 초과 8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25m 초과 8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30m 초과 8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35m 초과 8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40m 초과 8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45m 초과 8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50m 초과 8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55m 초과 8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60m 초과 8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65m 초과 8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70m 초과 8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75m 초과 8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80m 초과 8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85m 초과 8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90m 초과 8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895m 초과 9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00m 초과 9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05m 초과 9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10m 초과 9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15m 초과 9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20m 초과 9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25m 초과 9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30m 초과 9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35m 초과 9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40m 초과 9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45m 초과 9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50m 초과 9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55m 초과 9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60m 초과 9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65m 초과 9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70m 초과 9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75m 초과 9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80m 초과 9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85m 초과 9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90m 초과 9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995m 초과 10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00m 초과 10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05m 초과 10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10m 초과 10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15m 초과 10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20m 초과 10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25m 초과 10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30m 초과 10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35m 초과 10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40m 초과 10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45m 초과 10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50m 초과 10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55m 초과 10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60m 초과 10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65m 초과 10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70m 초과 10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75m 초과 10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80m 초과 10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85m 초과 10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90m 초과 10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095m 초과 11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00m 초과 11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05m 초과 11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10m 초과 11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15m 초과 11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20m 초과 11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25m 초과 11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30m 초과 11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35m 초과 11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40m 초과 11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45m 초과 11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50m 초과 11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55m 초과 11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60m 초과 11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65m 초과 11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70m 초과 11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75m 초과 11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80m 초과 11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85m 초과 11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90m 초과 11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195m 초과 12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00m 초과 12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05m 초과 12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10m 초과 12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15m 초과 12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20m 초과 12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25m 초과 12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30m 초과 12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35m 초과 12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40m 초과 12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45m 초과 12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50m 초과 12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55m 초과 12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60m 초과 12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65m 초과 12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70m 초과 12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75m 초과 12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80m 초과 12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85m 초과 12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90m 초과 12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295m 초과 13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00m 초과 13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05m 초과 13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10m 초과 13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15m 초과 13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20m 초과 13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25m 초과 13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30m 초과 13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35m 초과 13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40m 초과 13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45m 초과 13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50m 초과 13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55m 초과 13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60m 초과 13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65m 초과 13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70m 초과 13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75m 초과 13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80m 초과 13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85m 초과 13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90m 초과 13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395m 초과 14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00m 초과 14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05m 초과 14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10m 초과 14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15m 초과 14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20m 초과 14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25m 초과 14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30m 초과 14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35m 초과 14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40m 초과 14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45m 초과 14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50m 초과 14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55m 초과 14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60m 초과 14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65m 초과 14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70m 초과 14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75m 초과 14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80m 초과 14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85m 초과 14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90m 초과 14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495m 초과 15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00m 초과 15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05m 초과 15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10m 초과 15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15m 초과 15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20m 초과 15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25m 초과 15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30m 초과 15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35m 초과 15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40m 초과 15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45m 초과 15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50m 초과 15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55m 초과 15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60m 초과 15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65m 초과 15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70m 초과 15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75m 초과 15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80m 초과 15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85m 초과 15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90m 초과 15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595m 초과 16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00m 초과 16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05m 초과 16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10m 초과 16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15m 초과 16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20m 초과 16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25m 초과 16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30m 초과 16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35m 초과 16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40m 초과 16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45m 초과 16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50m 초과 16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55m 초과 16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60m 초과 16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65m 초과 16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70m 초과 16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75m 초과 16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80m 초과 16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85m 초과 16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90m 초과 16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695m 초과 17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00m 초과 17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05m 초과 17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10m 초과 17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15m 초과 17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20m 초과 17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25m 초과 17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30m 초과 17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35m 초과 17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40m 초과 17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45m 초과 17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50m 초과 17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55m 초과 17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60m 초과 17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65m 초과 17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70m 초과 17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75m 초과 17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80m 초과 17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85m 초과 17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90m 초과 17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795m 초과 18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00m 초과 18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05m 초과 18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10m 초과 18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15m 초과 18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20m 초과 18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25m 초과 18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30m 초과 18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35m 초과 18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40m 초과 18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45m 초과 18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50m 초과 18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55m 초과 18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60m 초과 18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65m 초과 18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70m 초과 18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75m 초과 18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80m 초과 18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85m 초과 18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90m 초과 18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895m 초과 19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00m 초과 19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05m 초과 19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10m 초과 19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15m 초과 19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20m 초과 19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25m 초과 19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30m 초과 19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35m 초과 19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40m 초과 19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45m 초과 19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50m 초과 19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55m 초과 19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60m 초과 19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65m 초과 19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70m 초과 19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75m 초과 19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80m 초과 19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85m 초과 19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90m 초과 19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1995m 초과 20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00m 초과 20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05m 초과 20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10m 초과 20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15m 초과 20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20m 초과 20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25m 초과 20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30m 초과 20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35m 초과 20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40m 초과 20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45m 초과 20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50m 초과 20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55m 초과 20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60m 초과 20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65m 초과 20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70m 초과 20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75m 초과 20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80m 초과 20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85m 초과 20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90m 초과 20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095m 초과 21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00m 초과 21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05m 초과 21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10m 초과 21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15m 초과 21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20m 초과 21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25m 초과 21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30m 초과 21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35m 초과 21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40m 초과 21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45m 초과 21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50m 초과 21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55m 초과 21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60m 초과 21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65m 초과 21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70m 초과 21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75m 초과 21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80m 초과 21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85m 초과 21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90m 초과 21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195m 초과 22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00m 초과 22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05m 초과 22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10m 초과 22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15m 초과 22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20m 초과 22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25m 초과 22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30m 초과 22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35m 초과 22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40m 초과 22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45m 초과 22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50m 초과 22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55m 초과 22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60m 초과 22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65m 초과 22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70m 초과 22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75m 초과 22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80m 초과 22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85m 초과 22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90m 초과 22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295m 초과 23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00m 초과 23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05m 초과 231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10m 초과 231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15m 초과 232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20m 초과 232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25m 초과 233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30m 초과 233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35m 초과 234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40m 초과 234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45m 초과 235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50m 초과 235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55m 초과 236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60m 초과 236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65m 초과 237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70m 초과 237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75m 초과 238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80m 초과 238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85m 초과 239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90m 초과 239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395m 초과 2400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2400m 초과 2405m 이하 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									

○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	■ 건폐율 결정 조서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건폐율</th><th>비 고</th><th></th></tr> <tr> <td>—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td>30% 이하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	—	자연경관지구	30% 이하			변 경																								
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—	자연경관지구	3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■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위 치</th><th>구분</th><th>계획내용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 <td></td><td> 도심주거 구역 A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(7층이하) 제1종일반 주거지역 </td><td> 주거 특화 구역 남산 연립 지역 </td><td>건 폐 율</td><td>자연 경관 지구</td><td> • 30%이하 </td><td>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건 폐 율 완 화</td><td>자연 경관 지구</td><td> • 8m(2층)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% 이하 완화 </td><td></td></tr> <tr> <td></td><td> 도심주거 구역 B 제3종·제2 종·제1종 일반주거 지역 </td><td> 주거· 상업 지원 구역 명동· 남대문 시장 연립 지역 </td><td>건 폐 율</td><td>자연 경관 지구</td><td> • 30%이하 </td><td>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건 폐 율 완 화</td><td>자연 경관 지구</td><td> • 8m(2층)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% 이하 완화 </td><td></td></tr> 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위 치	구분	계획내용	비 고		도심주거 구역 A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(7층이하) 제1종일반 주거지역	주거 특화 구역 남산 연립 지역	건 폐 율	자연 경관 지구	• 30%이하					건 폐 율 완 화	자연 경관 지구	• 8m(2층)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% 이하 완화			도심주거 구역 B 제3종·제2 종·제1종 일반주거 지역	주거· 상업 지원 구역 명동· 남대문 시장 연립 지역	건 폐 율	자연 경관 지구	• 30%이하					건 폐 율 완 화	자연 경관 지구	• 8m(2층)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% 이하 완화		변 경
도면 표시	적용구역	위 치	구분	계획내용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도심주거 구역 A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(7층이하) 제1종일반 주거지역	주거 특화 구역 남산 연립 지역	건 폐 율	자연 경관 지구	• 30%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건 폐 율 완 화	자연 경관 지구	• 8m(2층)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% 이하 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도심주거 구역 B 제3종·제2 종·제1종 일반주거 지역	주거· 상업 지원 구역 명동· 남대문 시장 연립 지역	건 폐 율	자연 경관 지구	• 30%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건 폐 율 완 화	자연 경관 지구	• 8m(2층)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% 이하 완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폐율에 관한 결정도	기 정 	변 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변 경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
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	■ 건폐율 결정(변경) 조서 <table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건폐율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—</td><td>B(성모수녀원 일대)</td><td>30% 이하</td><td></td></tr>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—	B(성모수녀원 일대)	30% 이하		■ 건폐율 및 높이 결정(변경)조서 ○ 자연경관지구 내 ‘건폐율 및 높이’ 기준 및 완화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름. ※ 현행 기준 조례(' 24.9.30. 개정)는 ‘건폐율 40% 이하, 높이 4층·16M 이하’ 임
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					
—	B(성모수녀원 일대)	30% 이하								
	■ 높이 계획 결정(변경) 조서 <table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높 이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—</td><td>B(성모수녀원 일대)</td><td>3층이하 (12m 미만)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/tr>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—	B(성모수녀원 일대)	3층이하 (12m 미만)	자연경관지구	
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						
—	B(성모수녀원 일대)	3층이하 (12m 미만)	자연경관지구							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										

○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

구 분	기 정		변 경								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	■ 건폐율 결정(변경)조서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도면 표시</th><th>용도지역</th><th>건폐율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 <td>—</td><td>제1종일반주거지역</td><td>30% 이하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/tr> </table>		도면 표시	용도지역	건폐율	비 고	—	제1종일반주거지역	30% 이하	자연경관지구	■ 건폐율 및 높이 결정(변경)조서 ○ 자연경관지구 내 ‘건폐율 및 높이’ 기준 및 완화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름. ※ 현행 기준 조례('24.9.30. 개정)는 ‘건폐율 40% 이하, 높이 4층·16M 이하’ 임
도면 표시	용도지역	건폐율	비 고								
—	제1종일반주거지역	30% 이하	자연경관지구								
■ 높이 계획 결정(변경) 조서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높 이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 <td>—</td><td>제1종일반주거지역</td><td>12m 이하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/tr> </table>		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—	제1종일반주거지역	12m 이하	자연경관지구		
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							
—	제1종일반주거지역	12m 이하	자연경관지구								

구 분	기 정		변 경
건폐율에 관한 결정도			
높이에 관한 결정도			

○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(화양7특별계획구역)
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	■ 건폐율 결정(변경)조서 <table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건폐율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-</td><td>화양7특별계획구역</td><td>30% 이하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/tr>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-	화양7특별계획구역	30% 이하	자연경관지구	■ 건폐율 및 높이 결정(변경)조서 ○ 자연경관지구 내 ‘건폐율 및 높이’ 기준 및 완화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름. ※ 현행 기준 조례(' 24.9.30. 개정)는 ‘건폐율 40% 이하, 높이 4층·16M 이하’ 임
	도면 표시	적용구역	건폐율	비 고						
-	화양7특별계획구역	30% 이하	자연경관지구							
■ 높이 계획 결정(변경) 조서 <table><tr><th>도면 표시</th><th>적용구역</th><th>높 이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-</td><td>화양7특별계획구역</td><td>12m 이하</td><td>자연경관지구</td></tr></table>	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-	화양7특별계획구역	12m 이하	자연경관지구		
도면 표시	적용구역	높 이	비 고							
-	화양7특별계획구역	12m 이하	자연경관지구							
구 분	기 정	변 경								
건폐율에 관한 결정도										